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단기 휴업 신고 의무 면제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426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단기(30일 미만) 휴업 신고 의무 면제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 출 일 : 2024. 12. 12.
3. 회 부 일 : 2024. 1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장정화·정비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 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어장정화·정비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단기(30일 미만) 휴업 신고 의무 면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재개업(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면 ----.

나. 검토의견

- 어장정화·정비업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것으로,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양식업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장정화) ①어장의 퇴적물 및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일, ②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어장정비) ③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재 배치하는 일로 현재 총 101개 업체가 있음.¹⁾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현황]

('24.1월 기준, 단위 : 개소, 척)

시·도	업체수	선박·부선
계	101	233
전라남도	24	56
충청남도	23	45
경상남도	22	58
전북특별자치도	13	30
인천광역시	6	14
경상북도	5	14
제주특별자치도	3	6
강원특별자치도	3	6
부산광역시	2	4

※해양수산부

□ 현행법에 따르면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²⁾

- 1) 「어장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가.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 나.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 다.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6.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어장관리법」 제1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①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장정화·정비업자가 경영난 등으로 인한 단기 휴업(30일 미만)하는 경우에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영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탄력적 영업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개정안과 같이 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를 면제하게 되면 어장정화·정비업자가 30일 미만 휴업 시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해당 사업자의 경영 운영상의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참고로, 개정안은 정부 차원에서 법제처 주도로 ‘영업자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업종 전환, 경영난 등으로 인한 휴업 등 영업자의 유연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휴업신고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것임.

-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가 제출한 법령정비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을 비롯하여 총 25개임(첨부 1 참고).

□ 참고로, 최근 3년간 어장정화·정비업 휴업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101개 업체에서 총 16건의 휴업신고가 있었고, 이 중 2건이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한 바 있음.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최근 3년간('22~'25) 어장정화·정비업 휴업신고 내역]

('25.1월 기준)

시·도	휴업신고 업체수	휴업기간		30일 미만 휴업사유
		30일 이상	30일 미만	
계	16	14	2	
경상남도	1	1	-	
경상북도	3	2	1	당사 사정
전라남도	9	8	1	정화선 미등록 사유로 인한 휴업
전북특별자치도	2	2	-	
제주특별자치도	1	1	-	

※해양수산부

- 또한, 미신고 휴업 기간의 적정성 부분과 관련하여, 법제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법령 중 영업자 휴업신고는 50% 이상이 30일로 규정하고 있고,³⁾ 해양수산부는 유사 입법례와 같이 미신고 휴업 기간을 ‘30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어장정화·정비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를 면제하려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19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1

영업자 휴업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정비대상 법령 목록

○ 법률 : 16개 법률

연번	정비대상 법률	업종	개정 내용	소관 부처
1	법무사법	법무사업	· 30일 이상 휴업시 휴업신고	법무부
2	변호사법	변호사업		
3	외국법자문사법	외국법자문사업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시계측관리업		행정안전부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제조·수입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6	자연재해대책법	방재관리대책 대행업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		
8	인삼산업법	인삼류제조업		농림축산식품부
9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청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환경부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대행업		
1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		해양수산부
14	어장관리법	어장정화·정비업		
15	항로표지법	위탁관리업		
16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	· 15일 이상 휴업시 휴업신고	해양경찰청